

2005년도
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5. 3.

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

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 신규대비표

항목	2004년	2005년	비고
1. 신청자격	○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 등은 제외	○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제외 ○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상기 대상자가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	변경
	○ 정규직 취업자는 제외 (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)	○ 전일제 (full-time) 취업자는 제외 (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)	변경
2.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	○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○ 국문표기: “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(KRF-2004-043-과제번호)” ○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(KRF-2004-043-과제번호)”	○ 좌동 ○ 명칭 변경 → 연구결과발표물 ○ 국문표기: “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(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)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(KRF-2005-043-과제번호).” ○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(MOEHRD,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) (KRF-2005-043-과제번호)”	변경

차 례

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	1
1. 사업목적	1
2. 지원방향	1
II. 지원계획	1
1. 지원분야 및 대상	1
2. 지원 예산	2
3. 지원규모 및 기간	2
III. 공모 및 신청	2
1. 공모방법	2
2. 신청방법 및 절차	2
3. 서류 제출	4
4. 신청자격	5
5.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	5
IV. 심사 및 선정	7
1. 심사절차	7
2. 심사방법 및 내용	7
V. 지원비 지급 및 관리	8
1. 지원비 지급	8
2. 지원비 관리	9
VI. 보고서 제출 및 평가	9
1.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	9
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	10
VII. 간접연구비 지원	12
VIII. 행정사항	12

I.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

1. 사업목적

-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의 연구자 양성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

2. 지원방향

-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와 학문간의 균형발전 도모
-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분야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 지원
- 여성 신청자 우대 (선정인원의 20% 내외)

II. 지원계획

1. 지원분야 및 대상

가. 지원분야

-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
-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,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
-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

나. 지원대상 : 보호학문분야에 적합한 전문학자 (신청자격 참조)

- ※ 편람, 사전편찬, 교재개발, 번역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다. 지원조건

-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. (기관에서는 선정된 강좌의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)
-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

2. 지원 예산

- 신규과제 지원비 : 2,910,000천원

3. 지원 규모 및 기간

가. 지원규모 : 1인당 연간 2,460만원

- 강의지원비 연 2,160만원(매월 균등지급)
- 연구활동비 100만원
- 기관 지원비 200만원 (단, 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,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)

나. 지원기간 : 1년

다. 선정과제 수 : 120과제 내외

Ⅲ. 공모 및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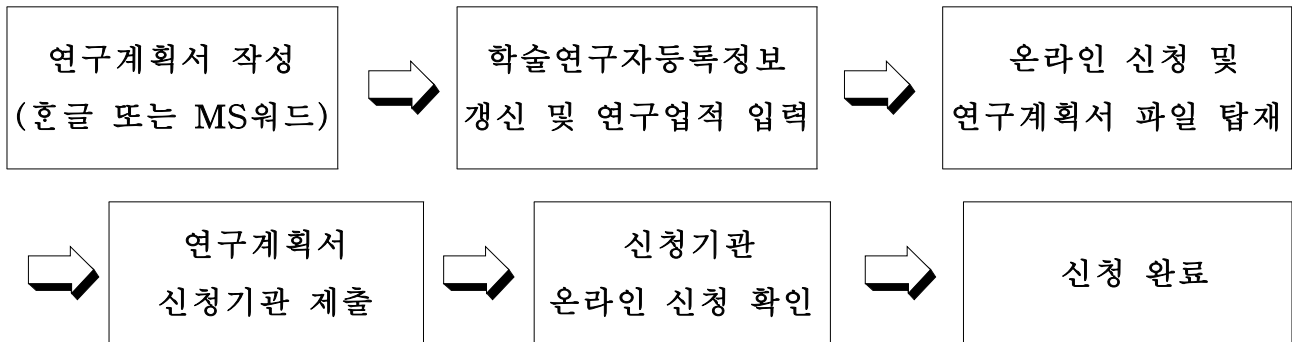
1. 공모방법

- 대학 총(학)장에게 공문(e-mail) 발송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
2. 신청방법 및 절차

가.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재단 홈페이지 www.krf.or.kr에 접속)

나. 신청 절차



다. 온라인 신청 전

- 1)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선정시 연구비 관리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
- 2) 각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신청 가능여부(결과보고 미제출 등) 확인 및 학술연구자등록에서 개인정보 수정(연구업적 등)
- 3)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, 온라인 신청 전 세밀한 연구계획서 작성 (훈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함)

라. 온라인 신청

- 1) 온라인 신청 기간 : 2005. 3. 15. (화) - 4. 14. (목) 18:00 까지
- 2) 온라인 신청 주의 사항
 -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구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및 연구계획서 파일의 수정·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함
 - ※ 탑재파일 : 강의 및 연구계획서 (양식 3)
 -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후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온라인 신청 후

1) 연구자

-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(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포함)을 출력하여 기타 제출자료와 함께 **신청기관**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
- ※ 신청자는 해당기관의 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2)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
- **온라인 신청 확인 시한 : 2005. 4. 18.(월) 18:00 까지**
-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.
- 온라인 신청 확인 시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,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보험 부담금이 지급됨.
-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강의·연구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.

3. 서류 제출

가. 제출서류

- 강의(1, 2학기 강의배정 포함) 및 연구계획 추천서 : 학과장 추천 <양식 1>
- 미취업 확인서 <양식 2>
- 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 <양식 3> (온라인 파일탑재 완료 후 제출)
- ※ 1년간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할 경우 신청자가 1개 대학을 지정하여 신청

나. 서류 제출처

-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연구 및 강의계획서 및 제출 서류 각 1부를 신청기관 연구비 담당 부서로 제출

4. 신청자격

- 보호학문분야의 전문학자로 신청하는 해당대학의 2005년 2학기 강의가 확정된 자
- 전일제(full-time) 취업자는 제외 (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)
 - ※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제외
 - ※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객원 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상기 대상자가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
-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함

'06년도 사업부터 신청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,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준은 '05년 말에 공고할 예정임

5.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

가. 연구비 신청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보고서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(단,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,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파견, 그리고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박사후해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중복되는 자

나. 연구 참여 제한

- 본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(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1과제에 해당함).
-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. 12.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. 1. 1.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,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,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,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. 1. 1.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(ABRL)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. 단,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.12.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(BK)21사업 참여자(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)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
- ※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
IV. 심사 및 선정

1. 심사절차

단 계 별	심 사 내 용	
1 단계	요건심사	-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검사 -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
2 단계	전공심사	-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 및 강의·연구계획서 심사
3 단계	종합심의	- 예산배정 및 과제선정

2. 심사방법 및 내용

가. 1단계 심사 : 요건심사

- 1) 심사방법 :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심사
- 2)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여부 등

나. 2단계 심사 : 전공심사

- 1) 심사방법 : 온라인 패널심사
- 2) 심사내용 :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 및 강의·연구계획서 내용 심사
 - ※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
- 3) 심사 항목

【적격심사】

구분	심사항목	적격	부적격	비고
보호학문의 적합성	보호학문분야 지원목적에 합당한 분야인가 심사			

【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사】

구분	심사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
강의내용	강의개설의 필요성	회귀분야 강좌개설 필요성	○ 회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
	강의계획서 평가	강의실적	○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
		강의계획 및 연구계획과의 연관성	○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
연구주제	독창성	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	○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○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
		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	○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○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
	학문발전 공헌도	학문적 가치	○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○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
		학문의 파급효과	○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○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
		교육과의 연관성	○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
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	연구내용 및 방법	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	○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
	선행연구	선행연구의 검토	○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○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

4) 과제별 평가점수 산출 : 표준점수제에 의한 극단점수 배제 후 산술평균

다. 3단계 심사 : 종합심사

- 예산배정 : 기본배정 10%, 추세변동 40%, 당해연도 신청 40%,
정책적 고려 10%
- 선정기준 확정

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

V. 지원비 지급 및 관리

1. 지원비 지급

가. 지급방법 :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(단,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)을 경유하여 지급

나. 지급시기 : 지원과제 선정 확정 후 지급

다. 지원비 사용 :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(또는 기관장)은 과
제별 협약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.

2. 지원비 관리

- 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(또는 기관장)이 중앙관
리하여야 함. 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
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함
 -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-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비를 지급 받았을 때
 - 강의 및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- 강의 및 연구기간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취업하였을 때 (잔액회수)
 - 해당 대학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
(표절 등)로 하였을 때
 -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내
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VI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1.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

가. 제출시기 :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

나.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
다. 제출서류

- 1) 2005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

- 2) 2006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
- 3) 연구진행상황보고서

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

가. 결과보고서 제출

- 1) 제출 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- 2) 제출 방법 : 온라인으로 제출
- 3) 제출 자료

가)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
나) 연구결과보고서(재단 소정양식)

다) 연구결과요약문(국·영문)

라) 강의결과보고서

※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4)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‘결과보고서’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,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는 물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.

나. 연구결과발표물 제출

1)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에 대한 책무

연구결과는 국내·외 전문학술지(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SCI&SCIE급)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고, 해당 논문 별쇄본 또는 학술 저서를 제출하여야 함.

2)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

3) 연구결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

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(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)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(KRF-2005-043-○○○○○○).”

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(MOEHRD,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)(KRF-2005-043-○○○○○○).”

4)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○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함

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D등급과 동일 적용

-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절차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, C,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 기간 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

다. 연구결과 사후 관리

○ 연구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
-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
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작성 및 제공

라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○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계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, 인력양성 실적 등)을 게재하여야 함

VII. 간접연구비 지원

지원대상사업이 아님

VIII. 행정사항

- 온라인 신청시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 홈페이지 『연구분야분류표』를 참고하여 심사희망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
-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
문 의 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 한국학술진흥재단

· 사업내용 문의 : 인력양성부 인력양성팀

Tel) 02-3460-5647, Fax : 02-3460-5630

· 전산입력 문의 : 학술정보담당관실

Tel) 02-3460-5544, Fax : 02-3460-5540

<양식 1>

2005년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

강의 · 연구계획 추천서

(학과장 추천서)

강좌명	2005년 2학기 강좌명 : 2006년 1학기 강좌명 :					
강의내용	강의기관	대학(교)		학과 (학과장 :)		
		전화 : ()		FAX : ()		
	강의학점		주당 강의시간		강의과목 구분	전공필수(), 전공선택(), 교양()
연구과제명						
신청자	성명	한글: (영문:)			주민등록번호	-
					전화	()
상기 신청자는 해당 보호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의욕이 왕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보호학문시간강사 지원사업 적격자로 추천하며, 상기 연구자가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에 선정될 경우 1년간 해당 강의를 배정할 것을 확인합니다. 2005. . . 대학(교) 학과 학과장 성명 : (인)						

※ 추천인은 신청자가 강의와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해야 함 (전일제 (full -time) 취업자 제외)

<양식 2>

미 취 업 확 인 서

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소속기관명			
신청자 연락처	자택주소 : 전화번호 :			
	휴대폰 : Fax : E-mail :			
내용				
	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신청인 (인)			

<양식 3>

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
강의·연구계획서
(사업명 :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)

강좌명	2005년도 2학기 강좌명 : 2006년도 1학기 강좌명(예정 : 가변적) :					
강의내용	강의학점		주당 강의시간		강의과목 구분	전공필수(), 전공선택(), 교양()
연구과제명						

※ 2006년 1학기 강좌배정은 강좌명이 변경가능하나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시 개설확정
되어야 함

I.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

1. 최종 학위논문

논문제목	
학 위 구 분	석사 (), 박사 (), 기타()

*기타란은 “특이한 기술”, “과정수료” 등의 사실을 기입 하십시오

●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반드시 본인이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연구 및 강의실적

1. 연구실적

●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입력 ·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2. 강의실적

강좌명	강의기관	기간	학점	주당 강의시간	수강 인원	과목 구분	비고

※ 과목구분은 전공필수 · 전공선택 · 교양중 택일하여 기재

III. 강의 내용 계획

※ 2005년 2학기과 2006년 1학기 강좌가 다를 경우에는 2개 학기의 강의계획을 작성함

※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.

● 강 좌 명 :

- 1) 강좌개설의 목적
(보호학문으로서의 필요성)
- 2)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
- 3) 강좌 내용 및 방법
- 4)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

IV. 연구계획개요

● 연구과제명 :

- 1) 연구목적 (필요성)
- 2) 연구내용, 범위 및 방법
- 3) 학문·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및 활용도
- 4) 참고문헌
(중요 선행연구의 검토,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정성)

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FAQ

1.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?

▶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.

단,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 등의 신청자가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천자의 확인 및 추천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

2. 2005년 기초학문지원사업 연구전임인력과 2005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까?

▶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재단 연구비는 1인이 2과제(책임 1과제·공동 1과제 또는 공동 2과제)까지 신청가능하나, 동일 차수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기초학문지원사업의 연구전임인력과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3. “2005년 2학기 강의가 확정된 자”로 신청자격이 명시되어있는데, 학교의 사정으로 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?

▶ 온라인 신청 현재 학교와 학과의 사정으로 강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과장의 강의배정 확약을 받은 자(추천을 받은 자)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
4. 전일제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?

▶ 아니요, 전일제(full-time) 취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5. 강의가 한 학기만 개설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▶ 아닙니다.

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이며, 1년 동안 강의가 개설되어야 합니다.

다만, 두 학기의 강좌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, 연구계획과 강의는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.

(지원기간 : 2005년 2학기부터 2006년 1학기까지)

6. 기관지원비의 용도와 신청절차를 알려주십시오.

▶ 기관지원비의 지원 목적은 연구자가 의료보험,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이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온라인 신청 사항 확인시 의료보험, 국민연금 등

각종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재단에서는 연구자에게 각종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기관에만 기관지원비(200만원)를 지원합니다.

7. 강의료를 이중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오.

- ▶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강좌(한 학기 한 과목)에 대하여 재단에서 강의지원비를 지급하므로 학교에서는 이중으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단, 기관에서는 일정 수 이하의 학생이 수강하더라도 해당 강의를 폐강해서는 안됩니다.